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(감찰팀·기획심사팀·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)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“2021년 3월 22일”을 “2023년 3월 22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	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 고 있는 감찰팀·기획심사팀· 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은 <u>20</u> <u>21년 3월 22일</u> 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, 기 획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 책과에서, 국제조사팀의 소관사 무는 조사총괄과에서, 국제협력 팀의 소관사무는 교역협력과에 서 수행한다.	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</u> <u>23년 3월 22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